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1527
------	------

2016. 12. 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6일, 이신혜의원외 26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신혜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의 경기침체 및 고용 없는 성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이에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장대여, 프로필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 같은 사업들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됨.
- 그러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일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
- 이에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동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년 구직비용 절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시의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의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으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취업날개 서비스’, 취업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카페’ 조성, ‘일자리 해커톤’ 개최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매월 외모관리에 평균 14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출항목으로는 ‘피부관리’(23.2%), ‘헤어 스타일 변화’(22%)에 앞서 ‘정장 등 의류 구입’(30.1%, 복수응답가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구직을 위한 정장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음.(2016.09, 취업포털 사람인)
-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시는 청년 취업자들의 취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취업날개서비스’라는 사업을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 취업날개서비스는 KEB하나은행이 시와 협약을 맺은 뒤 공유기업인 ‘사단법인 열린옷장’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만 18~34세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구직자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임.
-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사)열린옷장에 직접 방문하여 정장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1인당 연 2회까지 방문이 가능함.

▶ (사) 열린옷장 개요

- 설립 : 2012년 7월
- 대표자 : 한만일, 김소령
-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건대입구역 1번출구 150m)
- 운영시간 : 월~토요일 10: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보유 의복 : 약 3,000벌 (정장 800벌)

남성 110~115, 여성은 88~99 사이즈까지 구비
보유 정장은 증정(기부)와 구매를 통해 확보함

-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사)열린옷장을 통해 취업날개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남자 941명, 여자가 1,651명으로 총 2,592명임. 특히, 기업들의 공채면접이 몰려있는 5월과 10월 더 많은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올 연말 까지 약 4천명의 이용객을 목표로 하고 있음.

<취업날개서비스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 이용객수	2,592	72	536	458	368	349	275	534
성별	남	941	22	204	174	110	137	122
	여	1,651	50	332	284	258	212	362

다. 개정안의 타당성

- 현재 ‘취업날개서비스’는 KEB하나은행의 기부금 1억원을 통해 운영하는 단기 사업형태로 내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하여 추진될 계획 이었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시 예산으로 운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추진이 불가능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인 ‘취업날개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대상, 방법 등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은,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년구직자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라. 사업추진방향

- 이 같이 청년구직자의 정장대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시는 청년을 넘어 다양한 연령의 구직자들을 위해 현재 18~34세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상향시키고, 연 2회로 제한된 대여횟수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열린옷장’의 경우 ‘광진구 아차산로’ 부근으로 지역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정장대여공간을 확대 운영하거나 직접방문 외의 택배서비스 이용 등 해당 사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정장반납은 택배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사)열린옷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장대여의 경우는 대여 시에도 택배 이용이 가능함.

마. 종합의견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면접에 꼭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취업날개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직자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면접정장 대여사업 이외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혜 의원 대표발의)

의번 안호 1527

1. 제안이유

- 최근의 경기침체 및 고용없는 성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이에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장대여, 프로필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 같은 사업들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됨.
 - 그러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일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
 - 이에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청년 구직비용 절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되, 이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 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2.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항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청년 구직비용

나. 전제

- 사업대상 인원은 면접정장대여,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 서울시 유사사업 대상으로 함
- 비용은 2017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방법

- 서울특별시 추진 중인 유사사업의 예산(안) 자료를 기초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합계) ≈ 830,000천 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계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청년구직비용 (제11조)	166,000	166,000	166,000	166,000	166,000	166,000	830,000
	소계(b)	166,000	166,000	166,000	166,000	166,000	166,000	830,000
□총 비용(b-a)		166,000	166,000	166,000	166,000	166,000	166,000	830,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당관
정책조사팀장
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여차민
이정수

☎02-3705-1280, e-mail(intezer@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청년 구직비용

2. 비용의 추계

가. 총비용 ≈ 830,000천원

- 총비용 = 청년 구직비용

나. 청년 구직비 ≈ 830,000천원

$$○ \text{ 청년 구직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7년~2021년)

- 연간비용 ≈ 166,000천원

- 청년구직 비용 ≈ 166,000천원

· 청년구직비용 : 면접정장대여 + 헤어스타일링 + 메이크업 + 사진촬영

$$= 100,000 + 30,000 + 16,000 + 20,000$$

- 면접정장대여 : 100,000천원

· 25천원(1회) × 4,000명

- 헤어스타일링 : 30,000천원

· 남성 5천원 × 2,000명 = 10,000천원

· 여성 10천원 × 2,000명 = 20,000천원

- 메이크업 : 16,000천원

· 남성 5천원 × 2,000명 = 10,000천원

· 여성 30천원 × 2,000명 = 6,000천원

- 사진촬영 : 20,000천원

· 5천원 × 4,000명 = 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 계
면접정장대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헤어스타일링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메이크업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사진촬영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합 계	166,000	166,000	166,000	166,000	166,000	830,000

주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유사사업 예산 적용하여 추계